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 
2019. 12. 5(목) 10:00

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**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**  
(안전건설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(안)

## 1. 개 관

이 기금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」에 따라 도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 기금의 재원이며,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.

## 2.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[단위 : 천원]

2019년도 말 조성액 (A)	2020년도 운용계획			2020년도 말 조성액(A+B)
	수 입	지 출	증 감 (B)	
1,303,832	863,250	1,081,000	△217,750	1,086,082

### ○ 수입계획

- 공공예금 이자수입 31,250천원
- 부담금 832,000천원

### ○ 지출계획

- 일반운영비 11,000천원
- 시설비 1,070,000천원

## 3. 검토의견

### ○ 본 기금의 주요 사업은

도로굴착복구, 불량맨홀 정비 등이며

2019년도말 조성액은 총 13억 383만2천원임.

○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

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3,125만원과 일반부담금 8억 3,200만원으로

총 8억 6,325만원이며,

지출은 일반운영비 1,100만원과 도로굴착복구공사비 10억원, 불량맨홀 정비 7,000만원으로

총 10억 8,100만원임.

-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사업은 도로굴착 복구,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 관리 등에 대하여 운용방향을 수립하였으며, 기금의 용도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.

## 관련 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

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5.30.]

### □ 「도로법」 [시행 2019. 6. 19.] [법률 제15997호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

제91조(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)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·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.
-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

### □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조례」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7.18>

**제2조(기금의 재원)**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6.7.18>

1. 「도로법」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<개정 2016.7.18>
2. 기금의 이자수익금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. <개정 2016.7.18>

1. 도로굴착복구공사
2. 복구된 도로의사후관리(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)
3.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·연구·감독업무
4.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